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3,555,449	12,706,663
일반회계	404,252,733	12,127,582
특별회계	19,302,716	579,081
기타특별회계	19,302,716	579,08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252,916	37,587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3,491,058	104,732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171,003	95,13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92,468	5,774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557	1,997
드림빌특별회계	6,090,364	182,711
건축진흥특별회계	400,000	12,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21,482	42,6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16,868	96,50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91,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